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철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특성상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, 경기침체(높은 물가·환율·금리 등)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저조 및 투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.

이에 철도시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, 코로나 등 재해 발생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역사 등 운영사(중소기업 등)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점용 허가기간 확대 (안 제13조제2항)

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30년 → 50년으로 확대

나. 점용료 감면 (안 제14조제3항)

재해(코로나 등) 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 (최대 25%)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의 “30년”을 “50년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3항제3호의 “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면제”를 “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하고, 다음 각 목을 신설한다.

가.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: 해당 기간 동안의 점용료 전부
나.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: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(단, 감면율 상한은 최대 25퍼센트로 함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에 대한 적용례)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되, 점용허가기간은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시설물의 상태, 운영실적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, 20년 이내로 연장한다.

제3조(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후 점용료를 부과하는
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) ① (생 략)	제13조(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·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철골조·철근콘크리트조·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<u>30년</u>	1. ----- ----- ----- -- <u>50년</u>
2.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	2. ----- -----
3.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	3. -----

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철도 시설의 점용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<u>기간</u>을 초과할 수 없다. 제14조(점용료) ① ~ ② (생략)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~ 2. (생략) 3. <u>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면제</u>	----- ③ 삭제 제14조(점용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가.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: 해당 기간 동안의 점용료 전부</u> <u>나.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: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에 따라</u>
--	---

④ (생략)	<u>점용료를 감면(단, 감면율 상한은</u> <u>최대 25퍼센트로 함)</u>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75